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3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년 4월 23일(火) 마포구청장

3. 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4월 27일(土)

4.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2. 8. 23.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2013. 3. 28.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산사태 위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산(山)과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구성 내용 >

- 1)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 ~ 제18조(운영세칙)과 부칙으로 구성
- 2)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3) 안 제2조(설치)는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 4) 안 제3조(기능)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안전대책과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
- 5) 안 제4조(구성)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장이 하도록 함
- 6) 안 제5조(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 7) 제6조(위원의 의무)는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간사는 연 1회 회의출석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이 활동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

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8)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회피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9) 안 제8조(위원의 해촉)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10)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11조(상정 안건 의결), 제12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11) 안 제13조(의견청취)는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2) 안 제14조(현지조사)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13) 안 제15조(회의록)는 간사는 위원회 회의시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심의위원,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안건)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함
- 14) 안 16조(위원회의 수당 등)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15) 안 제17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 및 결과보고서 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함
- 16) 안 제17조(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도시에서도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처럼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발생하여 산(山)과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12. 8. 20. 산림청에서 각 자치구에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한 바,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내 산(山)(상암산외 5개소/ 51 ha)과 산사태 취약지역(창전동 35-25/ 2,770㎡외 3개소)에 산림내 수목식재, 위험 절개지석축쌓기 및 계류에 대한 복원공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관내에는 아현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많이 산재하고 있고 공사장 절개지 등 공사장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시기 적절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한 조례로서 2013. 2. 21. ~ 3. 13.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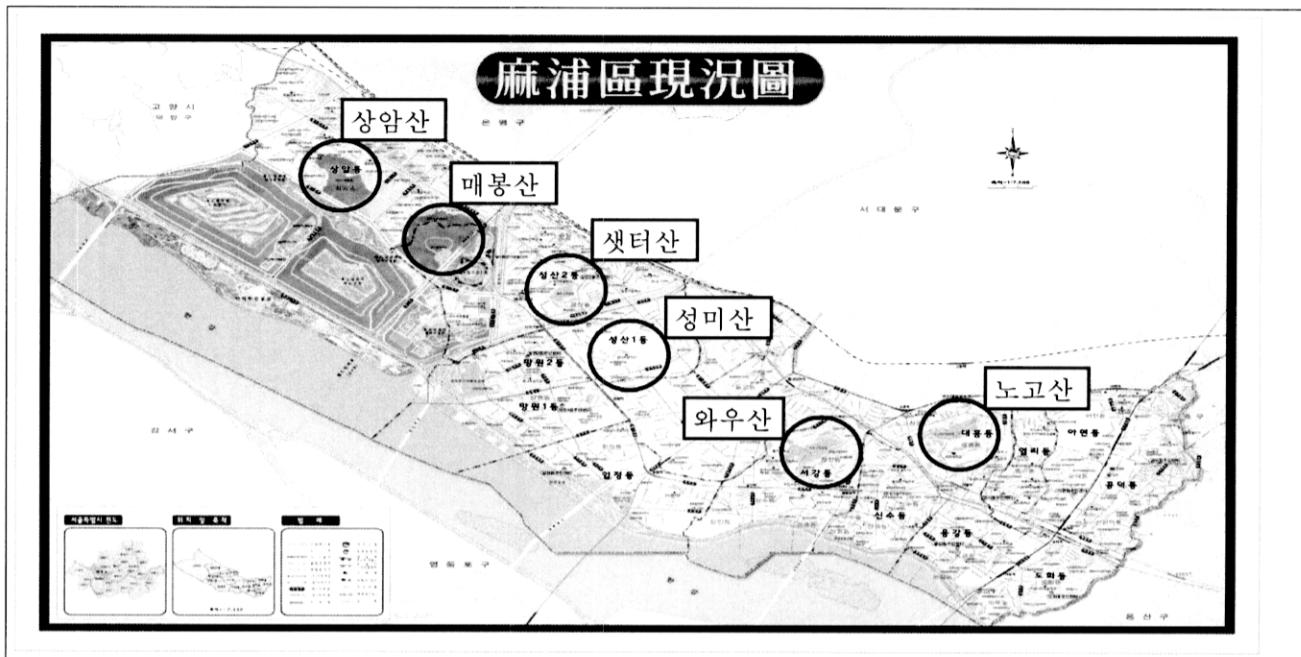
또한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마포구 관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은

1. 마포구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산(山)과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 거주지가 있는 지역으로,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일부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상 산(山)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축대를 석축대신 블록으로 쌓는 등 위험한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어, 만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및 건축허가 조건 미이행 건축물 현황을 파악한 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 허가조건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마포구 관내 산(山)의 임야, 공원, 녹지 등 숲 가꾸기 사업 관련부서에서도 산림 계획 초기시부터 산(山)의 지반을 약하게 하는 수종은 피하여 식재를 하고, 사후에도 산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수목에 대한 제거 및 토지 지반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지 및 사방사업 현황(마포구)

○ 산지 현황



○ 임야 현황

(단위 : ha)

계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비 고
91(약27만평)	19	14	58	

○ 산별 현황

산 명(공원명)	위 치	관 할 동	면 적(ha)
6개소			91
상암산(상암공원)	상암동 1693 일대	상암동	16
매봉산(성산녹지)	상암동 1631 일대	성산2동, 상암동	24
와우공원(와우공원)	창전동 3-231등 59필지	서강동	10
노고산(노고산공원)	대흥동 산1-30등17필지	대흥동	8
성미산(성산공원)	성산동 산11-1등 38필지	성산1동	30
셋터산(셋터산공원)	성산동 200-326등19필지	성산2동	3

□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현황(2012년, 2013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비 (천원)	도급업체	사업 내용
2012년 사방 사업실시설계 용역	2012.2.6 ~ 3.31	13,050 (국.시비)	송림조경	- 산림내 위험절개지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산림내 계류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림내 위험 절개지 정비 공사	2012.6.4 ~ 7.13	141,836 (국.시비)	SK임업	- 창전동 35-25 : 위험수목 75주 제거, 씨드스프레이 2,770m ² 등 - 창전동 42-15 : 석축쌓기 18m, 배수관 21m, 집수정 2개소 등 - 노고산동 산2-2 : 석축쌓기 28m, 풀룸관 36m, 수목 90주, 씨드 50m ² 등
산림내 계류 복원공사	2012.6.5 ~ 7.14	93,488 (국.시비)	인천산림조합	- 상암동 산4-19 : 위험수목 8주 제거 돌수로 21m, 강관 15m, 수목식재 795주, 식생매트 24m ² 등 - 성산2동 산37-1 : 집수정 1개소, 돌수로 32m, PE관 16m, 수목 576주 식재 등 - 상암동 산26-83 : 집수정 1개소, 돌수로 72m, 강관 24m, 식생매트 94m ² 등
2013년 사방 사업실시설계 용역	2012.12.24 ~2013.2.15	11,115 (국.시비)	산림조합 중앙회	- 2013년 사방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13년 산림내 위험시설물 실시설계 용역
2013년 사방 사업(공사중)	2013.4.10 ~ 5.19	89,331 (국.시비)	서울시 산림조합	- 상암동 산28-201(1) : 위험수목 23주 제거, 산돌쌓기 8m, 파종 50m ² 등 - 상암동 산28-201(2) : 산돌쌓기 4m, 수로 14m, 식재, 식생매트 88m ² 등 - 성산동 산11-58(계곡부) : 위험수목 39주 제거, 돌쌓기 56m ² , 풀룸관 64m, 목계단 65계단, 수목 89주 식재, 벗짚덮기 612m ² - 상암동 산26-104 : 돌쌓기 62m ² , 돌수로 72m, 수목 43주 식재, 벗짚덮기 152m ² 목재 흙막이 12m 등
2013년 산림 내위험시설 물정비공사(공사중)	2013.4.9 ~ 5.18	123,727 (국.시비)	서울시 산림조합	- 성산동 산200-326 : 위험수목 112주제거 낙석방지망 300m ² , 돌기슭막이 60m ² , 수목식재 94주, 파종 600m ² 등 - 성산동 산11-58 : 위험수목 28주 제거 석축 66m, 풀룸관 55m, 수목 114주 식재 - 서강동 산72-38 : 위험수목 77주 제거, 석축 58m ² , 훈스 58m ² , 풀룸관 46m 등 - 노고산동 산2-2 : 배수로 62m, 돌수로 20m ² 수목 120주 식재 등

관 계 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자체 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 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

정 · 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 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9(위원의 제척 · 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지역권자 ·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운영세칙)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시·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챕트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시행령 제32조의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시·군·구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조례(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